

#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6 - 72호

##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창 원 시 의 회 의 장

### 1. 자치법규명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개정이유

현행 조례의 뷰티제조산업 지원사업을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확대·구체화하고,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뷰티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뷰티제조산업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 사업을 구체화함.

(안 제4조제1항)

나.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2항)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windhwan80@korea.kr), 직접 방문 등

#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정순욱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88 |
|----------|----|

발의연월일 : 2026. 10. 15.

발 의 의 원 : 정순욱 · 감규상 · 김원일 · 박강우 · 박영주  
배명갑 · 백승규 · 변보미 · 서명일 · 이우완  
진형익 · 홍용채 의원(12명)

###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뷰티제조산업 지원사업을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확대·구체화하고,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뷰티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뷰티제조산업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 사업을 구체화함.

(안 제4조제1항)

나.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2항)

### 3. 참고사항

가. 신 · 구조문대비표

나. 관계 법령

다. 현행 조례

##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창업, 경영 또는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컨설팅 지원
2. 재료,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3. 브랜드 개발, 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4.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기술·정보 교류 및 협력
5. 전문인력 양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현행                                                                                                                                                                                                                                                      | 개정안                                                                                                                                                                                                                                                                                                                                                                                           |
|---------------------------------------------------------------------------------------------------------------------------------------------------------------------------------------------------------------------------------------------------------|-----------------------------------------------------------------------------------------------------------------------------------------------------------------------------------------------------------------------------------------------------------------------------------------------------------------------------------------------------------------------------------------------|
| <p>제4조(뷰티제조산업 지원사업) 시장은 뷰티제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창업·경영 지원 및 기술개발·연구의 촉진</p> <p>2. 우수 브랜드 육성, 국내외 판로 개척 및 인증 획득 지원</p> <p>3. 집적단지 및 체험공간 조성 등 기반시설 지원</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4. (생략)</p> <p>&lt;신 설&gt;</p> | <p>제4조(뷰티제조산업 지원사업) ① -</p> <p>-----</p> <p>-----</p> <p>-.</p> <p>1. 창업, 경영 또는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컨설팅 지원</p> <p>2. 재료,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p> <p>3. 브랜드 개발, 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p> <p>4.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기술·정보 교류 및 협력</p> <p>5. 전문인력 양성</p> <p>6.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

## ■ 화장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라.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2의2. 삭제

3. 삭제

3의2. “맞춤형화장품”이란 다음 각 목의 화장품을 말한다.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 다만,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한다.

## ■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뷰티제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제조산업의 기반 조성 and 산업 구조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제조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화장품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화장품의 연구개발·제조 및 품질 향상과 관련된 산업
2. 인간의 외적 아름다움 증진과 관련한 서비스, 미용기기 등의 제품 기획·제조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산업
3.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뷰티제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뷰티제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뷰티제조산업 지원사업)** 시장은 뷰티제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경영 지원 및 기술개발·연구의 촉진
2. 우수 브랜드 육성, 국내외 판로 개척 및 인증 획득 지원
3. 집적단지 및 체험공간 조성 등 기반시설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뷰티제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뷰티제조산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뷰티제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총괄 업무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뷰티제조산업 관련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뷰티제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총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뷰티제조산업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대학·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